

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국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사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,942,0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471,0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471,0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20,942,000천원	10,471,000천원	10,471,000천원	50 %	
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20,942,000천원	10,471,000천원	10,471,000천원	50 %								
사업내용	○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22세 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중위소득 52%이하 한부모가구에 아동양육비 등 지원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25개 자치구										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방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여성가족정책실	가족담당관	김상춘 2133-5165	안경천 2133-5185	박지병 2133-5187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8,471,900) 16,943,800	(x8,200,000) 16,400,000	(x10,471,000) 20,942,000	(x2,271,000) 4,542,000	(x27) 27
사회보장적수혜 금	(x8,471,900) 16,943,800	(x8,200,000) 16,400,000	(x10,471,000) 20,942,000	(x2,271,000) 4,542,000	(x27) 27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사회보장적수혜금	○ 아동양육비 19,467,000,000원 = 19,467,000천원
	○ 추가 아동양육비 285,000,000원 = 285,000천원
	○ 학용품비 1,145,000,000원 = 1,145,000천원
	○ 생활보조금 45,000,000원 = 45,0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, 학용품비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

□ 사업근거
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(복지급여의 내용)령상 근거
-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(지원대상)

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(취학시 만22세 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 한부모가구
- 지원내용
 - 아동양육비 : 만13세 미만 아동 대상, 월 120천원
 - 추가 아동양육비 :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대상, 월 50천원
 - 학용품비 :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, 연 54.1천원

-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, 월 50천원
- 총사업비 : 20,942,00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
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대상자에게 월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도모

사업추진절차

- 집행절차
 - 자치구별 복지급여 소요액 파악 후 자치구에 보조금 재배정
 - 자치구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계좌 입금(매월 20일)

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0,942,000	
기본계획 수립	2017.01		
월별 보조금 지급	2017.01~2017.12	20,942,000	월별 자치구 보조금 재배정 및 복지급여 대상자 계좌 입금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○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
2015년도	○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
2016년도	○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

향후 기대효과
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3	(x5,360,649) 10,721,298	(x-) 0	(x-) 709,000	(x6,069,649) 12,139,298	(x5,987,406) 11,974,813	(x-) 0	(x82,243) 164,485
2014	(x6,100,120) 12,200,240	(x-) 0	(x-) 0	(x6,100,120) 12,200,240	(x5,727,716) 11,455,432	(x-) 0	(x372,404) 744,808
2015	(x8,471,900) 16,943,800	(x-) 0	(x-) -800,000	(x8,471,900) 16,143,800	(x7,331,210) 14,662,421	(x-) 0	(x1,140,690) 1,481,379